

귀금속 제품 순도 오차 논란 KS 표준 제정으로 종지부!

업계에서 통용했던 -0.5% 오차 삭제하기로 ... 귀금속 순도 오차 Zero로 확정

귀금속제품의 순도 오차 논란이 KS 표준 제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기술표준원은 금, 은 등 귀금속 제품에 대하여 KS 표준을 제정하여 7월 7일 고시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독작성, 디자인 및 유행에 민감한 귀금속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인 질량, 유해원소, 순도 등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표준 제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순도규정의 경우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와 2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순도 함량미달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과 및 은과는 99.99% 이상, 24K는 99.9% 이상, 22K는 91.6% 이상, 18K는 75.0% 이상 등으로 확정하고, 품질 개선 및 생산시스템 개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2007년 3월까지 -0.5%로 관리하기로 되어 있다.

귀금속의 질량 규정은 그동안 시중에서 돈(3.75g) 단위로 사용되던 관행에 대하여, 법정단위인 그램(g) 단위 정착을 위하여 정수단위 제품 생산을 유도했으며, 특히, 허용오차 범위는 종전 10g 미만의 제품은 -1%, 10g 이상인 것에 내하여는 -0.8%이던 것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선 종류에 대하여 ±0.1% 이내로 강화하였으며, 보석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은 금과의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에 ±0.3% 이내로 강화하였다.

귀걸이, 팔찌, 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제품은 장시간 신체에 착용하는 제품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니켈의 용출량은 유럽의 피부접촉 금속제품 기준치인 0.5µg/cm²/week 이하로, 납의 함유량은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 100mg/kg 미만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새로운 표준에 의한 생산준비 등 중산제조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제정 표준의 적용시점을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2년 1월 7일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제품 제조업체체인 한국귀금속가공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금년 7월 7일 이후에 생산하는 제품도 순도 함량을 만족하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만, 약 3조8,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중 매장된 진열품에 대하여는 재제조비용과 제품회수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시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여 2013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생산되는 제품과 구제품의 구별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품질보증서를 확인하면 된다.

김용오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연구관

〈표1〉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 KS 발효일정

귀금속 KS 표준제정 고시	2011.7.7 고시
고시 발효일시	2012.1.7
KS제정 고시에 따른 준비기간	6개월(2011.7.7~2012.1.6)
기존 제규에 대한 유예기간	2년(2011.7.7~2013.7.7)

〈표2〉 순도

(단위: %)

금(금괴)	24 K 또는 999.9	999.9
순금 제품	24 K 또는 999	999 이상
	995	995 이상
금 합금	22 K 또는 916	916 이상
	18 K 또는 750	750 이상
	14 K 또는 585	585 이상
	10 K 또는 416	416 이상
	8 K 또는 333	333 이상
백색금 합금	WG 18 K 또는 750	750 이상
	WG 14 K 또는 585	585 이상
	WG 10 K 또는 416	416 이상
	WG 8 K 또는 333	333 이상
백금 합금	Pt 999	999 이상
	Pt 950	950 이상
	Pt 900	900 이상
	Pt 800	800 이상
은(은괴)	Ag 999.9	999.9
	순은 제품	Ag 999
은 합금	Ag 925	925 이상
	Ag 900	900 이상
	Ag 800	800 이상
	Ag 700	700 이상

비고

1. 귀금속 합금의 순도 표시는 1g 미만의 귀금속 가공품은 제외할 수 있다.
2. 2012년 1월 7일 이전에 생산된 순금제품, 금 합금, 백색금 합금, 백금 합금, 은은저울, 은 합금에 대한 표2의 순도 규정은 2013년 7월 7일부터 적용이다.